

전면 개정일 2019.09.05

# 정관

주식회사 리 감

#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리감(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업
2. 뉴미디어 영상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제작, 생산, 유통업
3. 영상, 음향기기개발, 제작, 생산, 유통업
4. 정보통신공사업
5. 제조업
6. 근로자파견업
7. 정보통신기기 도,소매업
8. 유,무선 통신장비업
9. 무역업
10. 건설업
11. 원격제어기기 및 자동제어기기 제조 및 공사업
12. 일제 지령방송
13. 데이터베이스업
14. 인터넷 마케팅브로드밴드 연구개발
15. 디지털 사이니지 개발업
16. 전기,전자제어 전산연구개발,용역,시공 및 그에 부반되는 제반사업
17.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설비 유지보수업
18.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업
19.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20. CCTV 제조 및 설치공사업
- 21. 네트워크 보안컨설팅
- 22. 방송장비 및 음향기기 제조,설치,판매,유지보수업
- 23. 위 각호에 해당하는 수출입업
- 2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에 둔다.  
단, 이사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 방법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eegam.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도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기일보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300,000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000주 로 한다.

제 8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 9 조 (주금납입의 지체 )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때까지 지체 주금 100원에 대하여 일 변 10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금전 또는 주식으로 배당한다. 이 경우 우선 비율은 최근 3년간의 배당률, 자금 조달의 필요성, 시장 상황, 기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④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 ① 본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하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 ②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소정의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본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

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6.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상환에 관한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함)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제 13 조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가 전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3. 전환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을 본다.
4.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가.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나. 특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15%이상 취득하는 경우

다.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라. 보통주식의 주가가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가를 1월 이상 상회하는 경우

#### 제 14 조 (자기주식의 취득)

-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부족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이사가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한다면 배상 책임은 없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제 15 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자기주식의 취득)에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제 16 조 (자기주식의 질취)

본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15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제 17 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 ① 회사가 상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정하고 주식취득의 조건은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4.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5.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6.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 ②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3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회사와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각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회사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하여 정하며 끝수는 버린다.

## 제 18 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 ①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②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 ③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 19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업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20 조 (시가발행)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21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대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22 조 (일반공모증자등)

-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그 제휴회사에게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⑤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의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 23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의 범위내에서 상업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인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7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주가

나. 당해주식의 권면액

2. 제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도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사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 24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 25 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 제 26 조 (주권의 재발행)

-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구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 날인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7 조 (수수료)

제24조 내지 제26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28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29 조 (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 ① 본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제 3 장 사 채

### 제 30 조 (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총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 31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전환사채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생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32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33 조 (교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교환사채의 발행액, 교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교환사채는 본 회사의 보통주식과 교환한다.

### 제 34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본 정관에서 정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주주의 성명 및 인감신고 등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 제 35 조 (소집)

- ①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소집한다.
- ③ 이사의 유고시는 이 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 순으로 소집한다.

### 제 36 조 (소집통지)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전에 무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전신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등기된 공고방법에 따라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 37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로 한다.

### 제 38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39 조 (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수권자분의 증가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
  4. 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수
  5. 이사 및 청산인의 해임

6. 자본의 감소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8.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④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같음할 수 있다.

제 40 조 (의결권 등)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41 조 (감사)

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주주총회가 감사의 업무 및 회사 재산상태에 관한 감독,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본 회사는 감사가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주주총회가 감사의 업무 및 회사 재산상태에 관한 감독,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제 42 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

## 제 5 장 임 원

제 43 조 (이사)

본 회사의 이사는 1인이상으로 하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① 본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이사를 3인이상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본 회사의 감사를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단,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제 44 조 (이사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 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한다.

④ 이사 선임의 의결권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하며 집중투표제를 채택한다.

#### 제 45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한다.

#### 제 46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가 본정관 제 34조에 정한 원수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연기할 수 있다.
- ②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제 47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와 상무이사 및 기타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며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48 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제 49 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①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전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 ③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률상 이사의 책임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0 조 (이사회 결의 방법)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제 51 조 (이사 및 감사의 보고의무)

이사 및 감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주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2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 ③ 임원의 상여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④ 임원의 업무상 사망시 유족보상 및 유족연금 지급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53 조 (상담역 및 고문)

- ① 본 회사는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상근하지 아니하는 상담역이나 고문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 제 6 장 계 산

#### 제 54 조 (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55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등)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기타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
- ② 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6 조 (이익금의 처분)

매 결산기의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
2. 별도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 후기이월금 약간
6. 임의 적립금

#### 제 57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현물(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 58 조 (중간배당)

- ① 본 회사는 6월 30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 1항의 중간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용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59 조 (배당금지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 제 60 조 (내부 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제 61 조 (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의 시점은 회사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 [별첨]
1. 임원퇴직금지규정
  2. 임원상여금지규정
  3. 임원유족보상금지규정

2019년 09 월 05 일

주식회사 리 감 대표이사 백 정 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4, 상가동 121호(도봉동, 한양수자인)

(별첨) 1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임원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은 임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와 감사를 말한다.
- ② 본 규정은 등기임원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③ 등기임원 또는 등기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 ① 임기만료 퇴임
- ② 사임
- ③ 재임 중 사망
- ④ 해임
- ⑤ 퇴직금중간 정산
- ⑥ 법에서 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제4조 [임원의 퇴직급여 산정 및 지급]

- ① 임원의 퇴직급여의 산정은 [2011년12월31일 이전 퇴직급여 + 2012년1월1일 이후 퇴직급여]로 한다.

퇴직급여 계산식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times \frac{1}{10} \times$ 2012년1월1일 이후의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times$ 지급률

- ② 임원퇴직급여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별 지급률		
임원의 직급	3년 미만 근무 시	3년 이상 근무 시
대표이사	2배수	3배수
이사	1배수	2배수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임원의 재임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제6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임원상여금지급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 임원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은 임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와 감사를 말한다.
- ② 본 규정은 등기임원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③ 등기임원 또는 등기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지급대상 임원]

본 규정에 의한 상여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근무하는 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4조 [정기상여금]

- ① 당사는 임원에게 기본연봉의 300% 범위 내에서 직급에 따라 년 3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급 시 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

## 제5조 [성과상여금]

- ① 당사는 임원에게 전년도 순이익의 30%범위 내에서 임원의 직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급 시 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

## 제6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의 확정시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은 본 규정 제4조 제②항 및 제5조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 결의일에 확정된 것으로 한다.

## 제7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은 본 규정 제6조에 의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등기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별첨) 3

#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 임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임원퇴직금(공로금, 위로금)외에 별도의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은 임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와 감사를 말한다.
- ② 본 규정은 등기임원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③ 등기임원 또는 등기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지급사유]

당사는 임원유족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할 수 있다.

- ①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시
- ② 업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발생시 장애등급 80% 이상시

## 제4조 [유족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 ① 당사는 임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5조 [유족급여 산정 및 지급방법]

- ① 당사는 임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5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